

농정국 소관 법령 제·개정 현황

# 설 명 자 료

2009. 3



**농림수산식품부**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농업정책국]**

# 목 차

I. 주요 개혁법률 국회 통과	1
II. 법안별 주요 내용	3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3
2. 한국농업대학설치법(개정)	6
3. 농어업 재해보험법(개정)	9
4.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	11
5.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제정)	14

## I. 주요 개혁 법률(농정국 소관) 국회 통과

### 〈주요 내용〉

◆ 주요 농정 개혁 관련 법률(농정국 5건)이 임시국회 통과(3.2)

- 특히, 교육 및 R&D와 관련하여 「농업경영체 육성법」,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등 2건의 법률을 제정

[통과 법률] 농작물재해보험법, 농업경영체육성법, 한국농업대학설치법, 쌀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 농업협동조합법, 농지법 등은 현재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 교육 및 R&D 체계 개편으로 농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 대책으로 보완

- ① 「농어업 경영체 등록제」 등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고, 「어업회사법인」 제도를 신설하는 등 경영체 육성 기반 마련

- 한국농업대학에 임업 및 수산관련 학과 설치

⇒ 농업경영체 육성법, 한국농업대학설치법

- ②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을 확대하는 등 소득 및 경영안정 강화

- 쌀 직불제 지급상한 설정 등 제도개선

⇒ 농작물재해보험법, 쌀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

- ③ 농림수산식품분야 과학기술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평가원' 설립 근거 마련

⇒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육성법

<참고>

## 농정국 소관 입법추진 현황

□ 총 11건 : 본회의 통과 5건, 상임위·소위 계류 5, 국회제출 1

법 안 (발의자)	주 요 내 용	비 고
①농작물재해보험법 (정부/황영철)	○ 재해보험의 대상품목을 농작물에서 가축, 농업시설 등으로 확대 ○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통합	통과 (2.12)
②농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이윤석)	○ 농업경영정보 등록제 시행 ○ 농가소득안정 직접지불제 도입	통과 (3.2)
③한국농업대학설치법 (정부)	○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 운영 ○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으로 변경	통과 (3.2)
④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정부/강기갑 최규성 주승용 정해걸 김창수)	○ 직불금 지급상한 설정 및 부당 신청자 제재 강화	통과 (3.2)
⑤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정부)	○ 농림수산식품 분야 과학기술정책 추진 근거 마련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평가원 설립	통과 (3.2)
⑥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정부/정해걸, 유성엽, 이계진)	○ 지원사업에 축사시설현대화 등 추가 ○ 추가적인 FTA체결에 따른 피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 지원범위를 확대	상임위 소위계류
⑦농지법 (정부/김낙성, 박준선, 이병석, 강창일, 강기갑, 문국현, 유성엽)	○ 한계, 상속농지 등 농지 소유규제 완화, 농지관리위원회 폐지, 종종시찰농지소유허용	상임위 소위 계류
⑧농업협동조합법 (정부/강기갑)	○ 지역농협 설립구역을 시·도로 확대, 일정 규모이상 조합장 비상임화, 중앙회장 대의원 간선제, 인사추천위원회 및 상임 감사체제 도입 등	상임위 소위 계류
⑨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유기준)	○ 구조개선 정책에 따라 어업 및 어획물 운반업을 폐업으로 어선원이 실직한 경우 통상임금의 6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실업지원금을 지급	미심사 (09.2.25 상정)
⑩농어가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황영철)	○ '04년 상호금융자금 추가지원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 및 조기상환 인센티브 지급	상임위 소위 계류
⑪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정부)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등 수산,어업 분야 통합(농특회계법 통합은 별도 추진)	상임위 미상정

## Ⅱ. 법안별 주요 내용

###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가 법률 제정 취지

-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제도를 마련해 효율적인 농어업정책 추진과 맞춤형 지원을 통한 농어업 경쟁력 강화 도모
- 농업경영체 단위 소득안정제도를 신설해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경영혁신 및 농업투자 여건 개선
- 농어업경영체의 경영 및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교육 및 전문컨설팅,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 등
  - 어업회사법인 제도 신설 등 농어업 법인제도를 개선

#### 나 주요 내용

-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제도를 신설,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 농어업경영체는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정부는 등록 정보를 기초로 지원을 실시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농업경영체 단위 소득안정제도 근거 마련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소득안정 직접지불제도 신설

- 현재 과수, 쌀 등 품목별로 추진되어 온 소득보전직불제를 앞으로 경영체 단위 직불제도로 개편해 효율화할 수 있는 기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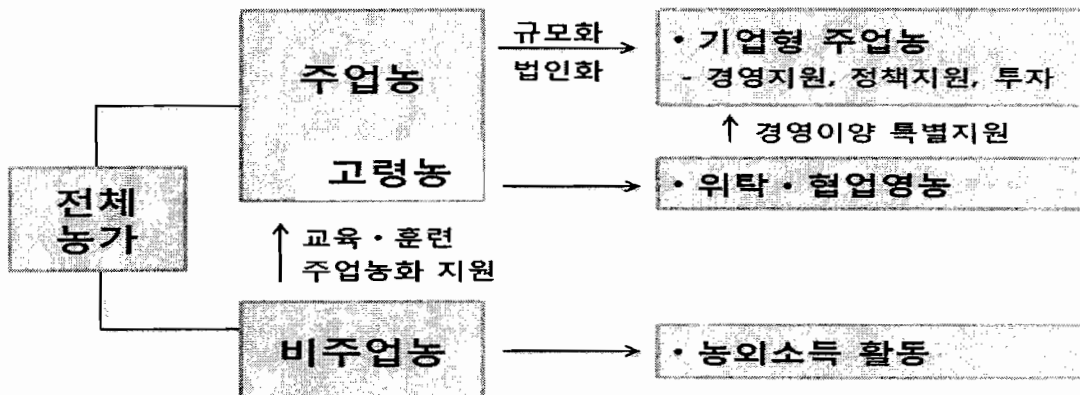
□ **후계농어업인력 양성 및 경영규모화 등 지원**

- 후계농어업인 선정, 농어업법인 설립 및 지원 근거 마련
- 경영규모화를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의 농업회사법인(합명, 합자)에로의 조직변경 근거 및 **어업회사법인 제도 신설**
  - \* 유사 농어업법인 설립 방지를 위하여 유사명칭 사용금지조항 신설
- 생산·경영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 농어업 인재개발전문기관 지정·운영지원 및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 운영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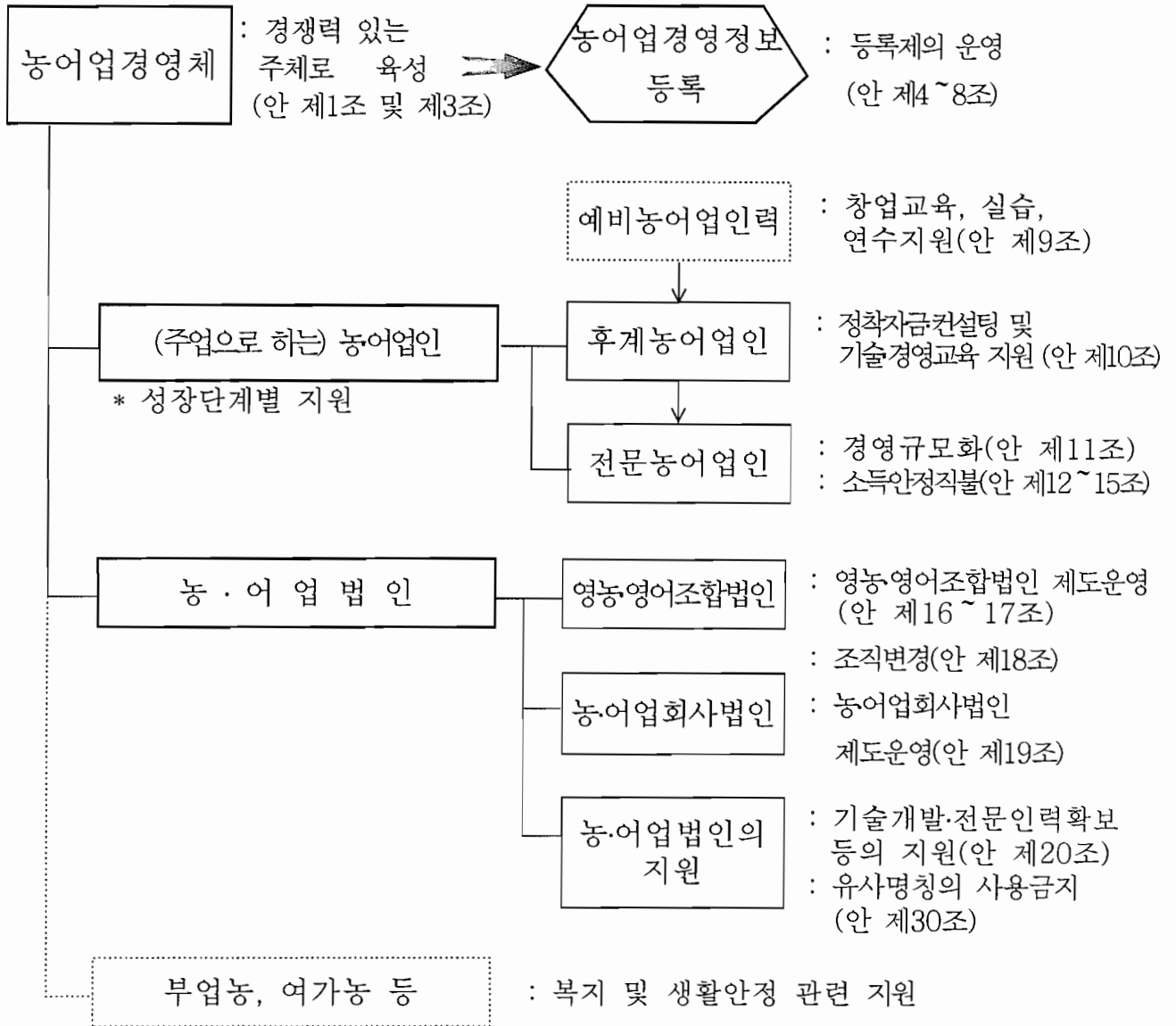
**다 기대 효과**

- 등록된 농어업경영정보를 토대로 기존의 일률적인 지원체계에서 **수준별·맞춤형 지원체계로 개선**
- 농어업법인제도 개선, 교육·컨설팅 체계 구축을 통해 농어업 경영체의 **규모화·전문화를 집중 지원**

< 농어업 경영체 지원체계 >



## 농어업경영체 육성시책과 입법체계



### < 지원 인프라 구축 >

- ◇ 농어업회계기준 모범례(21조), 교육·컨설팅 지원(22조), 농어업인단체의 교육 운영 지원(23조), 교육기관 평가(24조),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 운영(25조)
- ◇ 선도적 농어업경영 모델 확산(26조)
- ◇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 지정 및 지원(27조)

## 2

# 한국농업대학 설치법 개정/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으로 제명 변경

## 가 법률 개정 취지

- 대학의 인력양성 범위를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전 분야로 확대하여 농업 외에 임업 및 수산 관련 학과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 그 소관을 농촌진흥청장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변경
- 전공심화과정 이수자의 학사학위 수여를 위한 기준 등을 마련하고
  - 현행 학교의 운영상 나타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일부 교육운영 관련 미비점을 개선·보완
- 대학에 농업 외에 수산 관련 학과 등 설치를 위해 교명 변경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교명을 「한국농수산대학」으로 변경

## 나 주요 내용

- 수산학과 설치를 위해 교명을 「한국농수산대학」으로 수정하고, 법안 제명도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으로 변경
  - 농식품부 조직개편에 따라 대학의 인력양성 범위를 농업분야 뿐만 아니라 임업 및 수산업 분야까지 확대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후계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함

- 임업·수산 인력양성까지 확대함에 따라 대학 소속을 변경
  - 대학의 소속을 농촌진흥청장에서 농식품부장관으로 변경하고
  - 인력육성정책 수립과 지원을 연계하여 전문기술교육을 통한 인력의 체계적 육성과 관리 효율화 근거 마련
  
- 대학에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
  - 농업전문대학 또는 농과대학 졸업 후 농어업 관련 분야에서 재직 중인 자에게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 충족에 기여
  
- 교육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조
  - 대학의 현장실습 농장 추천, 졸업생 영농정착 실태조사 등 교육운영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력체계 구축 근거 마련

<b>다</b>	<b>기대 효과</b>
----------	--------------

- 대학위상 및 교육의 질적 제고와 함께 대학발전 가능
  - 지난 10년간 우수한 청년 농업인력을 배출, 농촌정착에 기여
  - 정책의 변화에 상응한 학과 신설, 기업경영 마인드를 가진 농업 전문 CEO 양성 등 농업인교육의 선도적 역할 기대
  
- 농림업+수산업+식품산업 등 융합의 시대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교육운영 체계로의 변화 가능
  - 농식품분야 종합인재양성대학으로 도약의 계기 마련

<참 고>

## 한국농업대학 설치법 개정 전후 비교

구 분	개정전	개정후
대학명칭	한국농업대학	한국농수산대학
대학의 장 명칭	학장	총장
소속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부
인력양성범위	농업 (식·특작, 채소, 과수, 화훼, 가축)	농업+어업(양식, 어로 등)+임업 (조림, 소득작물 등) +식품(가공분야) 등
입학정원	300명	장기적으로 500명
학위	전문학사	전문학사·학사 (학사 학위는 전공심화과정 이수자에게 수여)
교원		현장교수 임용 근거 마련
지자체장 협조		현장실습장 추천 등 지자체장 협조 근거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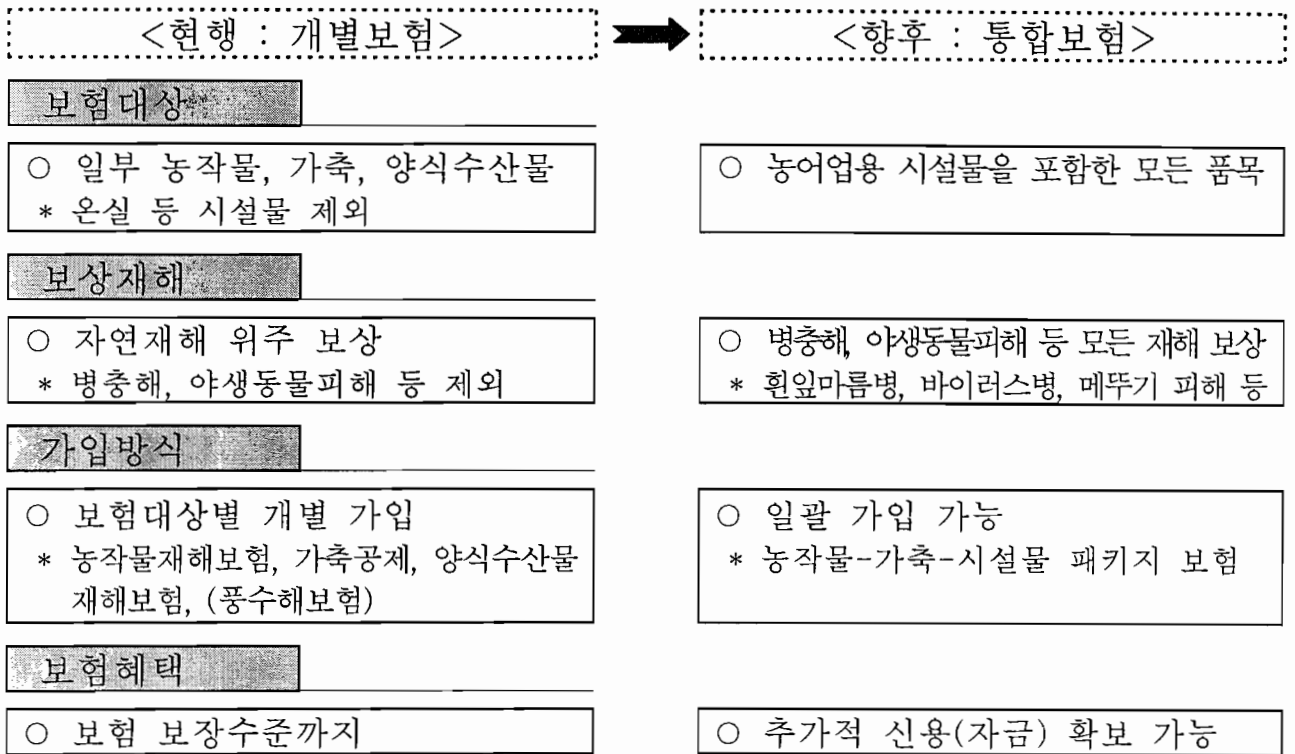
### 3 농어업재해보험법

#### 가 법률 제·개정 취지

- 각종 농어업 재해에 대비한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종합적으로 관리 지원하기 위해 관련 재해보험을 통합·일원화
  - 농작물재해보험, 가축공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등을 “농어업 재해보험”으로 통합 개편
    - 「농작물재해보험법」과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을 통합하면서 보험 대상을 농어업용 시설물까지 전면 확대

#### 나 주요 내용

- 재해보험 적용대상 및 대상재해를 전면 확대
  - 재해보험 대상을 농작물에서 가축, 양식수산물 및 농어업용 시설물까지 전면 확대
    - (현행) 15개 농작물, 12개 축종, 1개 어종 → (개정) 모든 품목 가능
  - 농어업 경영상 발생 가능한 모든 재해를 대상재해의 범위에 포함
    - (현행) 자연재해 위주 → (개정) 병충해, 야생동물피해, 질병, 화재까지 보상
- 보험가입 촉진을 위한 가입자 인센티브 부여
  - 보험가입 농어가에게 정책자금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 금융혜택 부여
- 신규 보험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시범사업 추진체계 개편
  - (현행) 시행령에 품목추가 필요 → (개정) 농식품부 장관 재량 실시



## 다 기대 효과

- 농어가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운영 가능
  - 농작물, 가축 등과 그 생산시설물을 패키지 형태로 보험가입 가능
  - (현행) 농수축산물-재해보험, 시설물-풍수해보험 → (향후) 종합보험
  - 종합위험(All-risks)담보, 다양한 특약 등으로 보장수준 선택
- 농어업인 중심의 one-stop 보험서비스 제공
  - 보험가입부터 보험금 수령까지 절차 간소화를 통한 편의성 향상
- 정책금융 지원 등 타 정책들과의 연계로 농어업 경영의 안정성 증대
  - 보험가입을 통해 정책자금 등 추가확보 가능

**4****「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내용****가 법률 제·개정 취지**

- 실경작 확인 체계 및 직불금 부당수령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여 실제 논농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개정안 마련
- '07년 감사원 감사 및 '08년 국정조사 시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쌀직불제 도입취지를 살리고, 법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

**나 주요 내용**

-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 등이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실경작 확인 시스템을 한층 강화
- 자산·소득이 많은 기업농 등에게 직불금이 편중된다는 국민적 비판을 반영하여 지급상한 도입
- 농업소득 이외 일정 금액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실상의 취미농·부업농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도시지역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에게만 직불금 지급

- 등록 신청기관 변경\*, 관외경작자의 증빙서류 강화, 실경작 여부를 심사하는 심사위원회 설치, 쌀직불금 신청·수령자의 정보 공개\*,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실경작 확인 체계를 대폭 정비

\* 주소지 읍·면·동 → 농지소재지 읍·면·동

\* 공개범위 :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직불금 수령액

- 직불금 부당수령을 근절하기 위해 등록제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벌칙 등을 새로이 마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수령하면, 원금의 3배를 징수하고 5년간 등록이 제한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을 도입

- 등록 신청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확인해 준 농업인 등에 대해서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을 도입

- 새로 변경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7월까지 등록 신청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을 조기에 추진할 계획

## <주요 개정 내용>

구분	현행	개정후
신청기관	신청자 주소지 읍면동	농지소재지 읍면동
지급면적 상한		지급상한 면적 설정
지급대상자	대상농지에서 논농업 종사자	대상농지에서 논농업 종사자 중 '05~'08년 중 1회이상 쌀직불금 수령자 또는 전업농·후계농 등
논농업 종사 확인	이장 확인	영농사실을 증명할 서류(추가)
부당수령 감시	부당수령신고센터 운영	신고포상금제 도입 직불금 신청·수령자 명단 공개
부당수령자 처벌	3년 이내 등록제한 지급금액 회수	5년 이내 등록제한 지급금액의 3배 징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다 기대 효과

- 실경작 하지 않는 자가 신청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실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함
- 신청자 명단 공개시 실경작자가 이의신청을 통해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 지급대상자 요건 및 부당수령자 처벌을 강화하여 직불금 제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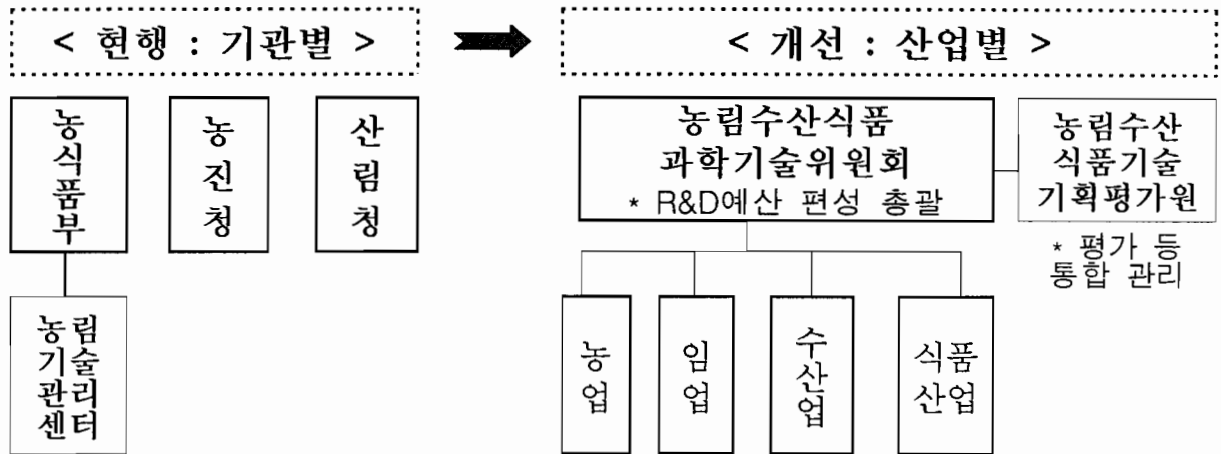
**5****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정****가 제정 취지**

- 본부, 농진청, 산림청 등 행정기관간 R&D 중복 투자로 인한 사업의 비효율성 제거 등을 위해 R&D 총괄·조정 기능 강화
- 현재 기관별로 연구개발 사업이 분리되어 있고 기관별 독립적인 추진으로 사업간 연계가 미흡하여 중복 투자 초래
  - \* '09년 R&D 예산 : 7,212억원(농식품부 2,188, 농진청 4,333, 산림청 691)
- 농어업 현장에 이용할 수 있는 연구 및 실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사업 추진 필요
  - 그동안, R&D는 농어업정책과 연계성이 미흡하여 체계적인 정책 뒷받침이 부족했고, 현장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연구자 중심 R&D 정책 추진으로 효율적이지 못한 상태

**나 주요 내용**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수립·시행(제5조)
  - 개별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R&D 육성 내용을 통합·체계화
    - 중장기 투자계획 마련 및 중복사업 조정 등으로 R&D 효율화
  - \* 과학기술기본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농촌진흥법, 산림기본법 등

## < 농림수산물 R&D 정책추진 체계도 >



### □ “농림수산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설립(제8조)

○ 「농림수산물식품 과학기술위원회」 보조기관으로서 농림수산물식품 기술정책을 수립하고 R&D 사업을 시행·평가

\* 타 부처는 연구기관과 구별된 연구관리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위탁·운영 중(산업기술평가원, 건설교통기술평가원, 환경기술진흥원 등)

- R&D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시스템 구축으로 중복·유사 사업 및 비효율적 요소 점검, 철저한 평가결과 피드백 등 추진

### □ “농림수산물식품과학기술 현장 수요조사” 강화(제10조)

○ 농수산물 및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발굴·보급하기 위해 현장 수요조사 규정을 신설

## 다 기대 효과

- 미래 첨단 기술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맞추어 친환경 녹색기술, BT·IT·NT 융·복합기술 등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기술에 중점 지원
    - \* 농림예산 대비 R&D 예산비중 확대 : ('08) 4.1%(6,558억원)→('12) 7(12,679)
  - R&D 체계개편 및 일원화를 통해 돈되는 기술개발에 주력
  
- 총괄·조정 기능이 강화되어 R&D 사업의 효율성 제고
  - 본부·농진청·산림청으로 분산되어 있는 R&D 사업의 투자 방향 설정, 예산편성 및 평가 등을 총괄 조정
  - 이러한 준비를 통해 2012년까지 국내 농업과학기술을 선진국 대비 68-82% 수준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
    - \* 민간육종(38%→69), 기계화(45→68), 수확후 관리(53→82), 가공·유통(40→73)
  - 중복 투자되던 R&D도 조정하여 실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에 투자를 확대
  
- R&D 성과에 대한 평가 기능 개선으로 예산 낭비 방지
  - 객관적 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
    - \* 「농림기술관리센터」를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으로 확대·개편('09.9월 설립)
  - 전문가의 의견수렴 기능 신설로 정책에 부합한 기술개발

< 참고1 >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주요내용

구 분	제 정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수립 (제5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발전방향과 목표, 중점기술개발 전략, 중장기 투자 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 평가원의 설립(제8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구체적인 기획·관리 및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기술 평가원을 설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및 지원체계 마련 (제8조~제16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에 대한 현장수요조사, 민간 기술개발 지원, 우수실용기술 발급 및 보급 등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및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사업 추진의 근거 명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공동연구 등 협력 사업(제17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의 정부, 농림수산식품 관련 국제기구와 연구 개발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개발 등을 위한 협력사업의 추진 근거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한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 협력(제18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한 상호 기술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 및 협력사업의 근거 마련</li> </ul>

< 참고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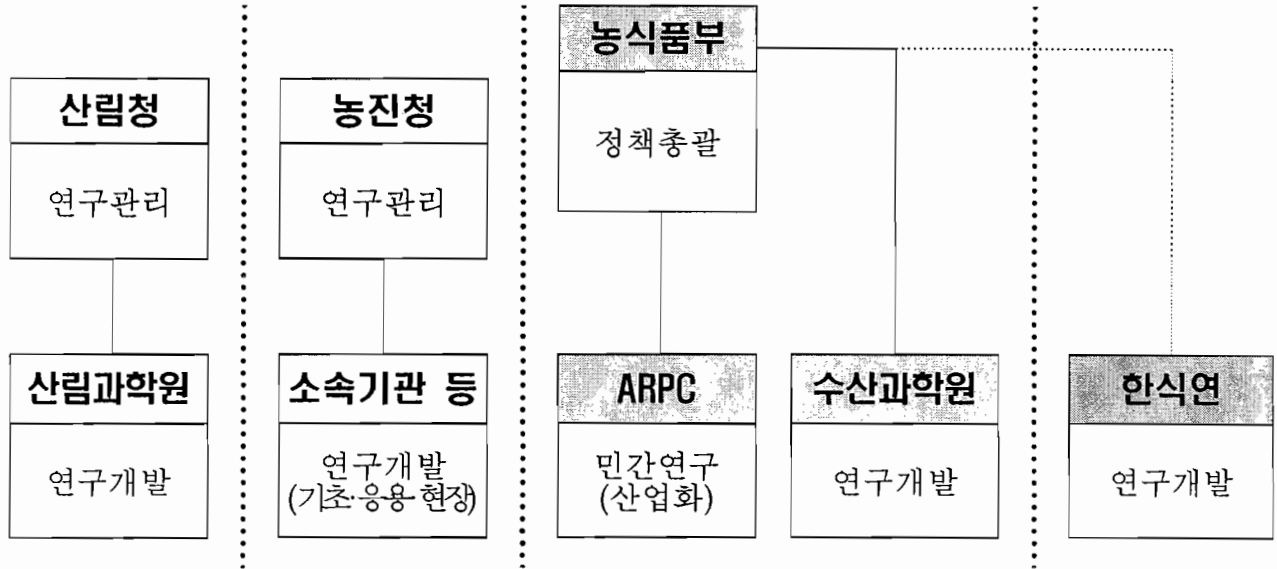
## 농림수산식품분야 R&D 현황

사 업 명	'07예산	'08예산 (A)	'09예산 (B)	'08대비 증감 (B-A)	
				증가율 (%)	
<b>총 계</b>	<b>572,930</b>	<b>655,404</b>	<b>721,158</b>	<b>65,754</b>	<b>10.0</b>
<input type="checkbox"/> 농림수산식품부 소계	149,562	194,409	<b>218,837</b>	24,428	12.6
○ 농림기술개발	42,574	73,523	88,523	15,000	20.4
○ 농림기술관리센터 출연	2,229	2,425	2,251	△174	7.2
○ 농촌개발시험연구	1,435	1,535	1,559	24	1.6
○ 정책연구개발	1,900	2,200	1,760	△440	△20.0
- (수산)정책연구비	175	175	-	△175	-
○ 농림바이오기술산업화 지원	-	8,000	8,000	-	-
○ 수의과학기술개발연구	15,766	14,474	14,974	500	3.5
○ 인수공통전염병대응기술개발	-	3,000	3,000	-	-
○ (수의과학연구)인건비+기본경비	6,000	6,000	6,000	-	-
○ 수산연구개발	7,150	8,000	9,000	1,000	12.5
○ 국립수산과학원(인건비, 기본사업비, 전산운영비)	36,131	38,557	45,279	6,722	17.4
○ 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	1,250	1,650	2,739	1,089	66.0
○ 수산환경관리체제 구축	4,616	5,116	5,025	△91	△1.8
○ 수산자원회복연구	4,599	5,049	5,099	50	1.0
○ 첨단양식기술개발	8,679	8,929	9,536	607	6.8
○ 수산연구시설관리	13,619	11,437	9,260	△2,177	△4.4
○ 선박유지비	3,439	4,339	4,673	334	7.7
○ 수산동물 전염병 방역 및 검역체계 구축	-	-	2,159	2,159	순증
<input type="checkbox"/> 농촌진흥청	367,364	393,484	<b>433,254</b>	39,770	9.1
<input type="checkbox"/> 산림청	56,004	67,511	<b>69,067</b>	1,556	2.3

< 참고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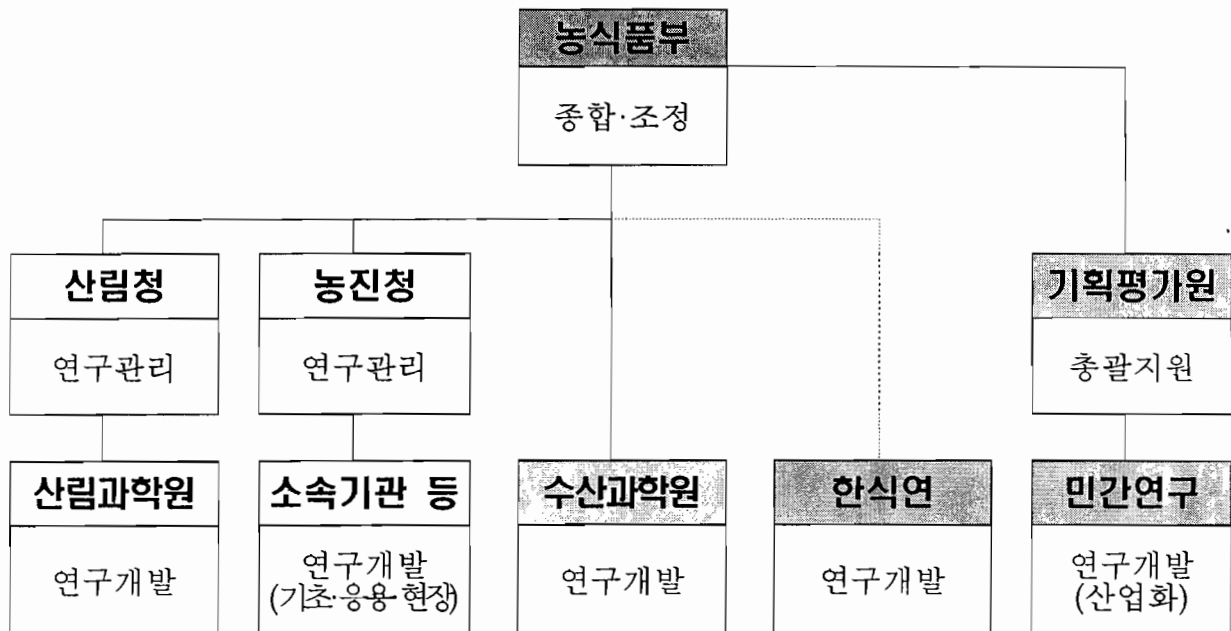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정책 추진 체계도

《 현 행 》 : 독립형 분산구조



\* 기관별 분리추진으로 정책방향과 R&D 투자의 연계 미흡, 중복 투자로 인한 효율성 저하 등

《 개 선 》 : 통합형 연계구조



\* 총괄·조정 시스템 구축으로 분야별 중복기능 해소, 성과관리 체계화, 효율성 제고 가능